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 번호	1121
----------	------

제출연월일 : 2024. 6. 28.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역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결핵예방법」의 개정)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후단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2조(「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단서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9조의 제목“(보고)”를“(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5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 중 “보고”를 각각 “제출”로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7조(「지역보건법」의 개정)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보고 등)”을“(자료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제2조 중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9조의 개정규정, 제3조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② (생 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u>질병관리청장이</u> <u>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u> <u>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u>해당 지방자치</u> <u>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근무 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조건을 이행 중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안에서의 변경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 사실을 <u>보고</u> 하여야 한다.	제6조의3(근무 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 ----- ----- ----- ----- -- . ----- ----- ----- ----- ----- ----- <u>통보</u> -----.
제9조(<u>보고</u>) ① 제6조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매월의 근무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제9조(<u>보고 등</u>) ① ----- ----- ----- ----- ----- ----- ----- <u>제출</u>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중사명령 등) ① (생 략)	제5조(중사명령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 무교육을 한 후 근무할 지역· 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② ----- ----- ----- ----- ----- ----- ----- <u>통보</u>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① (생 략)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 · 근무시설을 변경한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② ----- ----- ----- ----- ----- ----- <u>통보</u> -----.
제6조의2(파견근무) ① (생 략)	제6조의2(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	② -----

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직장 이탈 금지)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 금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 ----- ----- ----- <u>통보</u>-----.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직장 이탈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통보</u>-----.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② (생략)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③ ----- ----- ----- ----- <u>통보</u>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u>보고</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 ----- ----- <u>통보</u> ----- <u>보</u>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u>보고</u> 하여야 한다.	④ ----- ----- ----- ----- <u>제출</u>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u>보고</u> 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 ----- <u>제출</u> ----- ----- -----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⑥ (생략)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⑦ ----- ----- ----- ----- ----- ----- ----- ----- <u>통보</u> ----- -----.
⑧·⑨ (생략)	⑧·⑨ (현행과 같음)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u>보고 등</u>)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u>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u>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7조(<u>자료 제출 등</u>) ----- ----- ----- ----- <u>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u> ----- ----- ----- -----.